

2009.3.30

제 1 조(목적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제 58 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수수료의 종류) ①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 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계약 · 자문계약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에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나.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다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마. 성과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금전(법 제 86 조, 법 시행령 제 88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2-56 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가능)
2. 수수료
 - 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 - 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됨

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지급됨

제 4 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수준 또는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제 5 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 ① 회사는 신상품(집합투자기구,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을 포함한다)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신상품개발과 관련한 제반 사안을 관리하기 위하여 마케팅 부서에서 수수료율을 결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,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
④ 투자자문 · 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수수료계산방법, 수수료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.

제 6 조(설명의무) 회사는 법 제 47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3 조에 따라, 일반투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 7 조(투자광고)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, 집합투자업자,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· 관리하는 신탁업자,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· 투자증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 8 조(수수료의 인상)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신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법 제 190 조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,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 9 조(공시) 회사는 법 제 59 조제 1 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기준의 제정 및 개정) 이 기준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0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